
2026 개항희망문화상권 홍보마케팅 용역 과업지시서

2026 개항희망문화상권 홍보마케팅 용역 과업지시서

1 과업개요

□ 과업명 : 2026 개항희망문화상권 홍보마케팅 용역

□ 과업목적

- 통합브랜드 신나장의 효과적인 홍보마케팅으로 브랜드 인지도를 강화하고 상권르네상스사업 등과 연계한 마케팅 전개로 신규 방문객 유입을 확대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

□ 계약기간 : 착수일로부터 ~ 2026. 11. 20.

* 세부 일정은 추진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□ 장소 : 개항희망문화상권 일대

□ 금액 : 74,200,000원(금칠천사백이십만원정) 이내 ※부가세 포함

□ 과업내용 : 2026 개항희망문화상권 홍보마케팅 용역 운영

- 지역 축제 홍보부스 등을 통한 상권 홍보
- 상권활성화사업 성과의 체계적 기록 및 자산화

2 세부 과업 내용

□ 지역 축제 홍보부스 등을 통한 상권 홍보

○ 축제 홍보부스 운영

- (관내·외 홍보 부스 운영) 찐나 페스타, 찐나 사운드 뮤직페스티벌, 개항 카페거리 페스티벌 및 기타 축제 홍보 부스 운영
- 체험 이벤트: 신나장 캐릭터 포토존, 스탬프 투어, 방문객 현장 설문 및 DB 구축
- 축제별 1개 부스 이상, 연간 총 6회~8회 이상 운영 (발주처 협의 후 조정 가능)

* 운영 인력은 행사당 최소 2~3인 이상 배치

○ 홍보·기념품(굿즈) 기획·제작

- 기획 방향: 신나장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반영한 실용적·감성적 굿즈로 방문객 만족도 및 브랜드 인지도 향상 도모
- 제작 품목(예시): 커피, 에코백 등 (발주처 협의 후 품목 확정)
- 품목별 단가·수량·디자인 시안 사전 제출 후 발주처 승인 획득
- 총 제작 예산 및 품목별 수량은 전체 사업비 범위 내에서 발주처와 협의하여 확정(총사업비 15~20% 예상)
- 배포 방법: 홍보부스 방문객 대상 현장 배포, 성과 발표회 전시 및 배포 등



○ 가로등 배너, 현수막, 입주민 커뮤니티(맘카페) 등 신나장 브랜드 연계 홍보

- 가로등 배너
 - 규격: 표준 가로등 배너 사이즈 (발주처 지정 규격 준수)
 - 수량: 60조 (양면 기준 총 120매)
 - 설치 위치: 개항희망문화상권 주요 가로 및 축제 동선 중심 (설치 위치 목록 발주처 사전 승인)
 - 게재 기간: 설치 완료 후 ~ 2026. 11. 20.까지
- 상권홍보 리플렛
 - 내용: 개항희망문화상권 스팟 지도 + 주요 명소 소개 + SNS·홈페이지 QR코드 연계
 - 수량: 발주처 협의 후 확정 (배포처: 부스 현장, 안내 공공시설, 상가 등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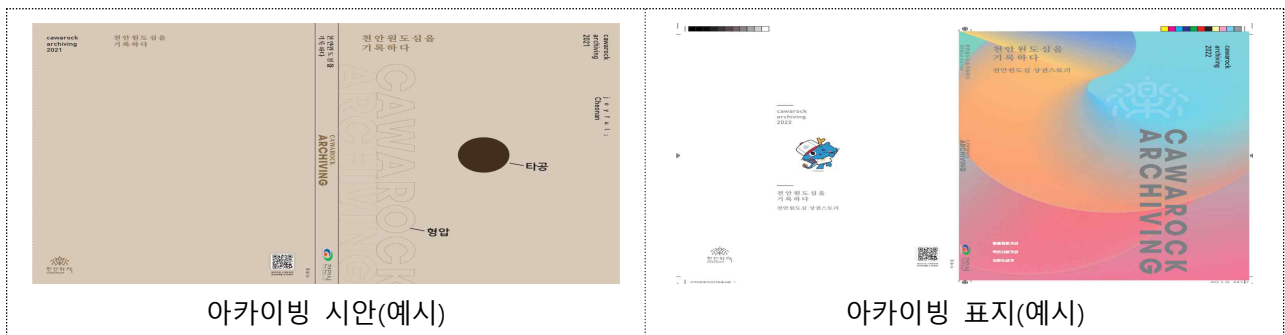
- 카드뉴스 · 온라인 콘텐츠

- 카드뉴스(이미지형 SNS 콘텐츠) 기획 · 제작 및 공식 채널 게시 (최소 6편 이상)
- 입주민 커뮤니티(맘카페 등) 게시용 홍보 콘텐츠 별도 제작 · 배포
- 모든 온라인 콘텐츠에 공식 SNS 또는 홈페이지 QR코드 · 링크 삽입 필수

□ 상권활성화사업 성과의 체계적 기록 및 자산화

○ 5개년 아카이빙 책자 기획 · 제작

- 구성: 사업 개요 → 연도별 성과 → 주요 사진 → 인터뷰 → 향후 방향
- 디자인: 신나장 브랜드 아이덴티티 반영한 감성 포토북 형식
- 수량: 150부 내외 (기관 · 미디어 · 상인 배포용)
- 디지털 버전(PDF · 웹페이지) 병행 제작으로 온라인 배포 활용



아카이빙 시안(예시)

아카이빙 표지(예시)

- 목적: 개항희망문화상권 상권활성화사업 5개년(2022~2026) 성과를 체계적으로 기록하여 기관 · 상인 · 미디어 활용 자료로 자산화
- 구성 예시 (총 5개 챕터 이상)
 - 사업 개요 — 배경 · 목적 · 추진 체계
 - 연도별 성과 — 주요 사업 내용 · 수치 · 변화 지표
 - 주요 사진 — 연도별 현장 사진 아카이브
 - 인터뷰 — 상인 · 참여자 · 담당자 인터뷰 (최소 5인 이상)
 - 향후 방향 — 과제 및 비전 제시

- 디자인 기준
 - 신나장 브랜드 아이덴티티(CI 컬러 · 로고 · 서체) 고려
 - 감성 포토북 형식으로 가독성 높게 구성
 - 디자인 시안 제출 후 발주처 승인 후 최종 인쇄
- 인쇄 사양
 - 판형: A4 또는 B5 (발주처 협의 후 확정)
 - 수량: 150부 내외 (기관 · 미디어 · 상인 배포용)
 - 제본 방식: 무선 제본 또는 양장 (발주처 협의 후 확정)
- 디지털 버전
 - PDF 파일 제작 (인쇄본과 동일 내용, 화면 가독성 최적화)

○ 5개년 성과 발표회 운영(검토)

- 일시: 2026년 11월~12월 중
- 대상: 사업단 · 상인 · 관계자
- 구성: 사업 회고 영상 상영 → 성과 발표 → 포토존 및 굿즈 전시
 - * 성과 발표회 운영 여부는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

□ 결과보고

○ 최종보고서

- 계약 종료 후 14일 이내 제출
- 개항희망문화상권 홍보마케팅 운영 증빙 사진(사진은 별도 정리를 통해 제출)
- 결과보고서(관련 양식 한글 파일로 작성 제출)

성과품 목록	내 용	비고
최종 보고서	사업 계획 및 수행 전반의 추진 경과·결과 요약, 성과 지표 분석 포함 등 최종 보고서 일체	
축제 홍보부스 운영 결과물	홍보부스 운영 축제명·일정·장소 목록, 부스 구성 및 체험 이벤트 운영 계획·결과, 방문객 현장 설문 및 DB 수집 결과, 현장 운영 증빙 사진 일체	

굿즈·홍보물 기획·제작 결과물	경품·기념품(굿즈) 기획안, 제작 수량·단가 내역, 제작물 실물 사진, 배포 현황 일체 홍보물 기획·제작 원본 파일(AI·PSD 등 편집 가능 포맷) 및 인쇄·설치 증빙 자료 일체	
5개년 아카이빙 책자 및 디지털본	아카이빙 책자 기획안·최종 디자인 시안, 인쇄본(150부 내외) 납품 확인서, 디지털 버전(PDF·웹페이지) 파일 및 배포 URL 일체	
5개년 성과 발표회 운영 결과물 (해당 시)	발표회 운영 계획서, 참석자 명단, 영상(회고 영상 포함) 및 현장 증빙 사진 일체	
성과 지표 보고서	사업 전체 KPI 집계표 · 홍보부스: 참여 축제 수, 부스 운영 일수, 방문객 수, 설문 응답 DB 수 · 굿즈·홍보물: 품목별 제작 수량, 배포 수량 · 아카이빙 책자: 인쇄 부수 · 성과 발표회(해당 시): 참석자 수	
사진·영상 자료	축제 홍보부스, 홍보물 설치 현장, 아카이빙 제작 과정, 성과 발표회 등 운영 증빙 사진·영상 일체 (별도 파일 정리 제출)	
사업비 정산서	사업비 집행 내역 및 증빙 서류 일체	
기타	기타 발주처가 요청하는 자료 일체	

3 과업의 수행지침

□ 일반사항

-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을 포함한 계약문서와 견적서, 협상내용,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함
- 본 과업의 취지 및 중요성을 고려하여 운영 및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, 과업을 수행하는 데 인천중구문화재단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함
- 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책임 및 행정적, 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 처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함

- 발주처가 요구할 경우 반드시 과업 진행 상황 보고를 하여야 하며, 과정 진행 중 또는 과업 완료 후에 사업부서의 출석 또는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때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함
- 과업의 수행은 발주처와 면밀한 협의와 세부내용별 사전승인을 받아 진행하여야 하며, 발주처가 과업의 범위 및 내용을 일부 변경 요청할 경우,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 수행과정에 이를 성실히 반영하여야 함
-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과업 수행 중 과업 내용 및 정책 등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와 내용해석에 견해차가 있을 때는 발주처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함

□ 사업 사전보고 및 승인

- 계약상대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아서 시행하여야 함

□ 사업의 시행

-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함
-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함에 있어 관계 법규 및 발주처의 지침 등을 준수해야 함
-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행사를 함에 있어 강사 등에게 불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비용을 징수할 수 없으며, 종교적 명칭 사용이나 활동을 할 수 없음
-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사업 운영이 적절하지 않거나 행사목적에 부합되지 않을 때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

- 계약상대자가 과업지시서 및 착수 신고 시 제출한 참여 자격 및 용역수행자를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발주처가 용역수행자의 변경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응하여야 함
-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일정에 차질이 생겼을 때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음
- 계약상대자는 과업 중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안전관리에 철저히 하여야 하며,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함

□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

- 계약상대자는 사업을 시행하고 언론보도 및 용역 관련 제작물 일체 및 용역 진행 사항 등을 담은 촬영 사진, 영상 등을 포함한 사업 전체 결과보고서를 공연 종료 후 14일 이내에 사업부서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며,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변경할 수 있음

□ 발주처의 지도·감독

- 발주처는 본 사업과 관련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지도·감독하며, 필요한 경우에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, 소속 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에게 계약상대자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 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으며,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함
- 발주처는 필요한 경우에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, 소속 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에게 계약상대자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 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으며,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함
-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어긋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시정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

□ 손해배상 등

- 계약상대자는 사업에 필요한 진행 및 관리와 관련된 제반 사항, 음원 등 사용 및 유포에 관련한 저작권 등에 철저를 기해야 함
- 사업 기간 중 사업비를 사용하여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유무형 재산에 대한 소유권과 저작권 등은 발주처에 있음
-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·사고에 대하여 민·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. 다만, 계약상대자가 귀책 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귀책 사유 입증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
-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발주처가 제3자에게 본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처에 바로 배상하여야 함

□ 계약의 해지 등

- 발주처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계약 상대방은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으며 또한 계약의 해지로 인해 발주처의 손해(신뢰실추, 손해배상 등)가 발생할 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
- 계약 상대방의 부도 및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과업 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을 경우
- 계약 상대방이 과업을 이행하면서 고의·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이 지연되거나 시정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과업의 정상수행이 어렵다고 발주처가 인정하였을 경우
- 발주처의 사전승인 없이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과업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
- 과업지시서 및 계약서에 명기된 계약 해지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
- 기타 과업수행에 있어 발주처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

□ 사업비 정산 등 회계처리

- 계약 상대방은 사업비를 발주처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, 인건비(강사비 등)는 타 비용에 우선하여 지출하여야 함
- 사업을 완료한 후 사업비 집행내용에 대한 사업비 정산서를 사업 종료 후 14일 이내에 발주처에 제출해야 함

□ 보안사항

- 본 과업 수행으로 알게 된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, 일체 자료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발설하여서는 안 됨
-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여서는 안 됨
- 본 사업의 중요계획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자료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함

□ 기타사항

-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본 사업의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당연히 시행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음
- 이 계약에 대한 소송은 발주처의 소재지 관할법원에서 행함

□ 용역계약 특수조건(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계약 승계 및 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)

○ 제1조(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계약의 포괄 승계)

- 본 계약 체결 후 「인천광역시 제물포구·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」(법률 제20161호, 2024. 1. 30. 공포, 2026. 7. 1. 시행, 이하 “설치법“이라 한다)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의 명칭, 조직 및 관할 구역 등이 변경되는 경우, 본 계약에 따른 발주기관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설치법에 따라 신설되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(이하 “승계기관“이라 한다)에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본다.
- 과업수행자는 제1항에 따른 행정체제 개편을 이유로 계약의 이행

을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없으며, 승계기관과 별도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본 계약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. 다만, 행정 절차상 필요할 경우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 또는 승계기관의 변경계약 체결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○ 제2조(보조금 교부 절차에 따른 대금 지급 지연 및 소급 지급)

- 본 용역의 사업비는 국비·시비·구비 보조금으로 구성되며, 관련 법령에 따른 보조금 교부 절차를 거쳐 집행된다.
- 설치법 시행(2026. 7. 1.)에 따라 현 발주기관이 폐지되고 승계기관 (인천광역시 제물포구)이 신설됨에 따라, 보조금 교부 주체 및 예산 과목의 전환, 회계시스템 재편성 등 불가피한 행정 절차가 수반된다. 이로 인하여 대금(기성금, 준공금 등)의 지급이 일시적으로 지연될 수 있다.
- 제2항에 따라 지급이 지연된 대금은 승계기관의 보조금 교부 및 예산 집행 절차가 정상화되는 즉시 우선적으로 소급하여 지급한다.
- 제2항의 대금 지급 지연은 발주기관 또는 승계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설치법에 의한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불가피한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, “과업수행자“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 계약 체결 시 서면으로 동의하며, 해당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 및 승계기관에 지연배상금, 이자 또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지 아니한다.

○ 제3조(기타 사항)

- 본 특수조건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관련 법령에 따르며,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 당사자 간 협의를 우선하고,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해결한다.